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830

발의연월일: 2022. 8. 11.

발 의 자: 장동혁 · 구자근 · 김도읍

김승수 • 박덕흠 • 백종헌

유창현 • 이명수 • 이용호

이주환 · 조수진 · 주호영

최승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연구결과(「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15.1일)와 휴가사용률(52.3%)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20.6일)와 휴가사용률(70%)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임금근로자 1,400여만명이 부여된 연차휴가를 완전히 소진할 경우 추가적으로 16.8조원의여가소비 지출, 2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218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기대되나,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12 신설).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2(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일·휴양연계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에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인 프라를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
	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기업의 일ㆍ휴양연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 · 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
	<u>광에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u>
	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인
	프라를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
	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
	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
	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할 수 있다 <u>.</u>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ㆍ휴양연
	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
	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u>있다.</u>